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
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개발제한구역 내 공항의 관제탑 등 항공안전 관련 시설을 기능에 필요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해 높이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,

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또는 재해로 주택 등이 철거·멸실된 경우 신축이 허용되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동의 등 요건을 갖춘 공유토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, 토지분할 면적기준의 본문과 단서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,

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공원을 그 성격에 맞게 생활편익사업 유형에서 환경·문화사업 유형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제16조제4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

나.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경우

제27조제1항제1호 중 “공원, 상·하수도”를 “상·하수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숲길”을 “공원, 숲길”로 한다.

별표 1의 제5호다목다)① 중 “말한다]”를 “말하며,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소유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신축 허가 신청 당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고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16조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]”로 하고, 같은 목 다)② 중 “말한다)”를 “말하며,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소유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신축 허가 신청 당시 다른

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고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16조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표 제5호라목다) 중 “말한다]”를 “말하며,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소유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신축 허가 신청 당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고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16조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]”로 한다. 별표 2 제2호에 다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의2.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공항에 설치되는

다음의 시설은 가목에 따른 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- 1) 「공항시설법 시행령」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항행안전시설
- 2) 「공항시설법 시행령」 제3조제1호아목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시설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유토지에서의 주택 등 신축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 제5호다목다)①·② 및 라목 다)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규정에 따라 신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토지의 분할) 법 제12조제 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”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 상(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 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 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 곱미터 이상)인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 도 분할할 수 있다.	제16조(토지의 분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토 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. <u>다만,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 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 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는 제외한다.</u>	4. ----- -----. <u>다만,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.</u>
<u><신 설></u>	<u>가.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 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</u>
<u><신 설></u>	<u>나.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목</u>

	<u>이 대인 토지를 형질변경 하는 경우</u>
제27조(주민지원사업)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7조(주민지원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생활편익사업: 도로, 주차장, <u>공원, 상·하수도</u> , 소하천·구거(溝渠: 도랑), 오수처리시설,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	1. ----- <u>상·하수도</u> ----- ----- ----- -----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5. 환경·문화사업: 녹지, 경관, <u>숲길</u> , 토담길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여가활동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는 환경·문화적 특성을 가진 시설의 설치·정비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	5. ----- <u>공원, 숲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745